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재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가 이미 폐지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어 상위 법령 체계와 불일치·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의 일관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도록 하고, 여비의 적용 기준을 총칙화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